







- 본 안내서는 생성형 A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각 주체들(A 사업자, 저작권자, A) 이용자)에게 저작권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A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저작권 산업과 창작 활동 전반에 걸쳐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이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작 분야에 있어서 생성형 AI를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생성형 AI로 야기될 경제적 피해와 일자리 위협 등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촉발된 저작권 쟁점들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법조계・산업기술계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2023년 2월 발족하여 운영하였으며, 본 안내서는 해당 워킹그룹 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안내서는 생성형 A 구현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에서부터 A 산출물 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에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학습 및 A 산출물 생성 부분을 중심으로, A 사업자와 저작권자, A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현행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자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생성형 AI 사례 및 관련된 국내외 입법 동향 등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 본 안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 균형있는 저작권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A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의 창작활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본 안내서는 생성형 A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한 유권 해석 자료가 아니며, 저작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적인 판단은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 본 안내서는 2023년 12월 기준 현행 법률과 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률 제·개정이나 새로운 판결 또는 Al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수정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법률 상담 및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똮

제1장	생성형 Al 기술과 저작권	07
	01, 생성형 Al(Generative Al) 기술의 의의 및 적용 사례	08
	02. 저작권 관점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10
제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15
	01, 생성형 AI 학습 단계	16
	02. AI 산출물 생성 단계	19
	03.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	21
제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23
	01. AI 학습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24
	02,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26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29
	0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유의	30
	02, 연구·교육·창작 분야 등에서의 윤리 및 정책적 고려	34
	03. 그 외의 권고사항	36
제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39
	01.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40
	02,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41
	03.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국내외 사례	42
	04. 등록 시 유의사항	44
제6장	「Al-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47
	01.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48
	02. 향후 추진 계획	50

Q&A		53
	01. AI를 학습시키는데 왜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54
	02.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AI 사업자는 어떻게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나요?	55
	03, 유럽연합의 DSM 저작권 지침에는 저작권자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Text and Data Mining, TDM)을 거부할 수 있도록(Opt-out) 한 규정이 있다는데, 우리나라 저작권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57
	04. AI 산출물 제작을 위하여 입력하는 개별적인 프롬프트도 저작권으로 보호 되나요?	58
	05.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건가요?	59
	06.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채색하고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작성을 가미한다면 저작물로 인정 될 수 있나요?	60
	07. Al를 활용(문장 요약, 표·그래프 작성)하여 작성한 신문기사의 경우 저작 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61
	08. 직접 생성한 AI 산출물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무방한가요?	62
	09. AI 산출물이 저작권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나요?	63
	10. Al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Al 커버곡을 제작하여 이용할 때에는 누구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64
	11.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도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한가요?	65
	12, AI 산출물을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66
	13. AI 산출물인 음악을 마치 사람이 작곡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67
	14. 생성형 AI와 관련된 국내외 법원의 판결이 있나요?	68
[14.24]		
[부록1]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활용한 학습 과정	73
[부록2]	생성형 AI 관련 소송 및 저작권 쟁점	77
[부록3]	생성형 AI 관련 미국 법원 판결 분석(Thaler v.e Primutter, D.D.C., No. 1:22-cv-01564)	81
[부록4]	AI 관련 국내외 대응 현황	87
[부록5]	국내 A대학 생성형 AI 활용 옵션	101
[부록6]	AI 학습 관련 국내 방송사 및 언론사 약관 내용	105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의 의의 및 적용 사례

가 생성형 AI 기술의 의의

■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셋에 기반한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 등의 산출물을 제시하는 AI 기술을 의미



고 답러닝(Deep Learning)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학습한 패턴에 기반하여 추론할 수 있도록 한 AI 기술

- 생성형 AI는 컴퓨터가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 특히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학습 모델로 활용
 - ※ 인공 신경망은 인간의 뇌가 동작하는 원리를 모방하여 구현한 학습 알고리즘을 지칭 부록1 인공 신경망을 통한 학습과정 참고
-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챗GPT^{OpenAI}는 영화 각본에 대한 스토리 아이디어를 서술하고, 감독처럼 카메라, 배우 위치와 표정, 조명 활용, 소품 사용도 제시
 - RadioGPT^{Flurifit}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방송 대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AI DJ 보이스로 방송을

나 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례

- (자연어 생성) 산업계에서는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언론기사나 소설, 리뷰 작성 등 주로 자연어 생성 분야(챗봇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대표적인 자연어 생성 분야의 AI 모델이며, 하이퍼 클로버 X^{diolid} , 챗GPT $^{\text{OpenAl}}$, 바드 $^{\text{Google}}$ 등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챗봇 형태로 서비스되어 Q&A, 요약, 번역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됨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대규모 언어 데이터(텍스트)를 학습하여 주어진 맥락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연관성 높은 내용의 문장을 출력하는 생성형 AI 모델































생성형 AI 관련 소송 및 저작권 쟁점

** 생성형 Al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23, 12, 기준), 향후에도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

원고









피고

 그림, 사진, 만화, 서적, 희극, 가사, 뉴스 기사, 프로그래밍 코드 등의 저작자 ■ 생성형 AI 사업자

분야	회사명	생성형 Al
언어 생성 모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챗GPT(ChatGPT)
	오픈AI(OpenAI)	
	메타(Meta)	라마(LLaMA)
	구글(Google)	바⊑(Bard)
	앤트로픽(Anthropic)	클로드(Claude)
	블룸버그(Bloomberg)	블룸버그GPT(BloombergGPT)
이미지 생성 모델	스테빌리티 Al(Stability Al)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미드저니(Midjourney)	미드저니(Midjourney)
	디비언트아트(DeviantArt)	드림업(DreamUp)
코드 생성 모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코파일럿(Copilot)
	깃허브(GitHub)	
영상 생성 모델	런웨이 Al(Runway Al)	런웨이(Runway)

주요쟁점

- 원고의 저작물이 피고의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단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권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저작권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 피고가 생성형 AI 학습용으로 활용한 데이터셋에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거나, 생성형 AI 산출물이 원고의 저작물을 정확하게 요약 · 복제 하고 워터마크를 그대로 산출한다는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배타적 권리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를 침해한다는 주장
 -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일체에 해당

[스테빌리티 AI가 게티이미지(Getty Images)의 사진을 AI 학습에 이용했다는 주장의 근거]





(좌) 게티이미지 사진 (우) '스테이블 디퓨전'이 생성한 이미지²⁷⁾

- 저작권 대위 책임(Vicarious Infringement): 우리 법상의 방조 책임과 유사한 책임으로, 저작권 직접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주장할 수 있으며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생성형 AI에 대해 통제 권한이 있는 사업자가 이를 통제하지 않고 금전적 이득까지 취했으므로 사업자에게 대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
- 저작권 관리 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관련 침해: 저작권 직접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주장할 수 있으며, 생성형 A가 원고의 저작물을 학습하거나 이를 산출하는 과정 에서 원고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정당한 권원 없이 고의적으로 제거 또는 변경하였으므로 저작권 관리 정보의 동일성(미국 저작권법 제1202조)을 침해한다는 주장
 - 우리 저작권법상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 · 변경 등의 금지)에 해당
- 원고의 저작물이 피고의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되었음이 증명될 경우 피고 측에서 공정이용의 법리를 통해 저작권 침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아직 해당 단계까지는 진척된 소송이 없음







생성형 AI 관련 미국 법원 판결 분석 (Thaler v. Perlmutter, D.D.C., No. 1:22-cv-01564)



개요

-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창작한 이미지에 대해 개발자가 해당 AI를 저작자(author)로 등록 신청한 사건에서,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
 - 개발자는 미국 저작권청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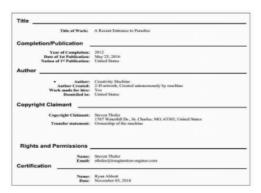
사실관계

- AI 기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를 개발한 스티븐 탈러(Steven Thaler)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미술 작품을 창작함*
 - * 해당 작품은 개발자의 관여 없이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임
- (등록 신청) 스티븐 탈러는 위 작품을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등록 신청하면서 저작자를 '창작 기계'로 기재하고, 자신은 해당 프로그램의 소유자로서 저작권 청구인(저작권자)으로 기재

♥ 스티븐 탈러가 기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저작자(author): Creativity Machine
- 저작물(work):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창작됨
- 저작권 청구인(Copyright Claimant) : Steven Thaler(본인)
- 양도(Transfer Statement) : 기계의 소유자
- ※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물 창작 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무방식주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등록해야 하며, 여기서 저작권 등록이 거절된 경우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등록 거절)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저작권법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에만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작품의 경우 '인간 저작자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 거절



〈본 사건 등록 신청서(Steven Thaler)〉

판결분석

- (쟁점) 미국 저작권청은 이 사건 작품이 '인간 저작자 요건'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정한바,
 - 해당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인간의 개입 없이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스티븐 탈러는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그가 해당 AI의 소유자라는 것을 근거로 저작권이 그에게 양도된다는 논리 구성*
 - * 미국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개념 활용
 - ※ 미국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고용주 또는 그 저작물이 작성된 목적이 되는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보며,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가 그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를 소유함(미국 저작권법 제2장 제201조 (b))
 - ※ 스티븐 탈러의 행위는 A를 저작물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여 A로 창작된 작품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게 하려는 일종의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음

Plaintiff attempts to complicate the issues presented by devoting a substantial portion of his briefing to the viability of various legal theories under which a copyright in the computer's work would transfer to him, as the computer's owner; for example, by operation of common law property principles or the work-for-hire doctrine,

- (법원의 판단)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이익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 본 사건의 경우 양도 대상인 재산권과, 업무상저작물 권리 청구를 주장하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 A가 창작의 도구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며 저작권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것만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저작권의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라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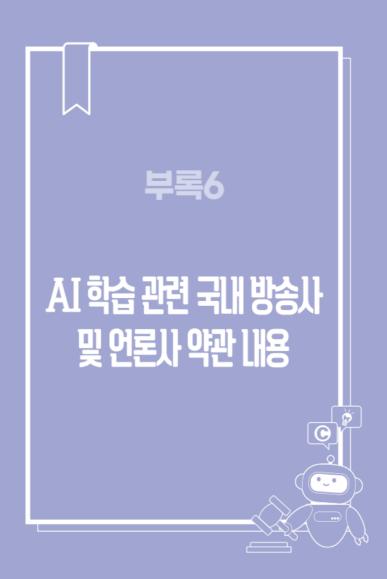














AI 학습 관련 국내 방송사 및 언론사 약관 내용

구분	업체명	약관 내용	
방송사	000	이용약관 및 영상 콘텐츠 하단에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l학습 이용 금지" 문구를 삽입	
	A일보	제12조 인공지능 및 대량 크롤링 1. 회사는 A일보닷컴을 통해 제공하는 제반 콘텐츠 및 서비스와, 이외의 외부 플 랫폼에 유통된 모든 A일보 콘텐츠를 대상으로 로봇, 매크로, 스파이더, 스크 래퍼 등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략) 3. 회사가 A일보닷컴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내용을 인공지능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그 활용이 공익 및 비영리 목적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로 활용 시 회사와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	B일보	제25조 (대량 크롤링 및 인공지능 학습) 회사는 robots,kd 프로토콜에 허용된 대로 크롤러를 통해서만 크롤링(crawling) 을 허용하며, 회사의 단독 판단에 따라 크롤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 에 의해 부여되는 사용권한은 본질적으로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되며 학습 데이터(인공지능(Al)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 포함 등)로 활용 시 회사와 반드시 서면 협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C일보	제27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및 크롤링) 1. 회사는 C닷컴을 통해 제공하는 제반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외부 플 랫폼에 유통된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자동화 도구(로봇, 매크로, 스파이더, 스크래퍼 등)를 활용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C닷컴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와 온라인 서비스 내용을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등에 활용할 경우 회사와 사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제1장

WS AI **저작권** 안내서

발 행 2023년 12월 27일

기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법제연구팀

집 필 박정훈 선임연구원(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강보라 차장(한국저작관위원회 등록임치팀)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원명 실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인식연구실)

고한규 책임연구원(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주 소 (52851) 경남 진주시 소호로 117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저작관위원회 www.copyright.or.kr

인쇄처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